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7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조)

1) 현행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의 소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하면 일부 농산물은 출하 연기일이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2)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에 대한 최저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고 소분류의 최저 감소상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안전한 농산물을 적기에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1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338호, 2020.8.4.(2020. 8. 4.~2020. 8. 25)

2) 심의위원회

가) 2020. 6. 24.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0-3337호, 2020. 7. 24.)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2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크롬의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고, 성상 판단을 위한 시험법 마련 및 비타민 D 등의 시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안 제 3. 1. 1-2, 1-5~7, 1-9, 1-12~13, 1-24~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나.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안 제 3. 1. 1-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크롬의 기능성 내용 마련 제안
2)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기능성 정보 제공

다. 성상시험법 신설(안 제 3. 1.~2., 제 4. 2-7)

1) 성상 판단을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상 시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한 성상시험법 신설
3) 성상 시험 관련 기준 및 규격 명확화

라.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3, 3-7, 3-10, 3-12, 3-13)

1) 검체채취량, 전처리 방법 및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2)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 개선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266호 및 267호, 2020. 6. 30.(2020. 6. 30. ~ 2020. 7. 31.)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 · 규격 분과 심의: 2020. 8. 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0-2719호 및 2720호, 2020. 6. 16.)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원안의결(2020. 8. 13. ~ 2020. 8. 14.)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0. 8. 2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741회, 2020. 9. 11.)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조리세트(소위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 규격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원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2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하고,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고령친화식품의 물성(경도 및 점도)시험법을 신설하고, 이물, 비타민 및 올리고당 시험법의 분석조건 등을 최적화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2. 4. 31), 제2. 4. 32), 제5. 22. 22-2]

1)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

2)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 · 유통기준, 제조 · 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신설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제2. 1. 1) (24) 및 제2. 3. 11)]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씨앗이 포함된 열매 및 삼(대마)씨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 및 조건의 명확화 필요

2) 식품원료 중 씨앗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섭취 시 씨앗이 제거되는 경우, 씨앗을 포함한 열매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3) 삼(대마)씨앗 및 삼(대마)씨유에 칸나비디올(CBD) 기준 신설

4)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사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매오징어(Watasenia scintillans)와 Japanese sea cucumber(Stichopus japonicus/ Apostichopus japonicus) 2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9) 이사-디,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8) 캡탄,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9) 트리플루미졸,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79) 폴펫,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5) 피프로닐,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3) 이미벤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65) 디메테나미드,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8) 플루설파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81) 육-비에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0) 비사이클로피론, (473) 피라지플루미드,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

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56) 린코마이신, (82) 세파세트릴, (127) 안티피린, (129) 구아이페네신, (170)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1) 플루메타손, (172) 클라노부틴]

1) 「약사법」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린코마이신 등 7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축 · 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2) 글리포세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로부터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산물 중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1.2 1.2.2, 제8. 1. 1.5, 제8. 1. 1.5 1.5.2, 제8. 2. 2.1 2.1.5 2.1.5.4, 제8. 2. 2.2 2.2.2 2.2.2.3 나, 제8. 2. 2.2 2.2.2 2.2.2.7, 제8. 2. 2.2 2.2.2 2.2.2.9 가, 제8. 2. 2.2 2.2.2 2.2.2.11, 제8. 2. 2.2 2.2.2 2.2.2.15, 제8. 3. 3.1, 제8.3. 3.4 3.4.1 가 1), 제8. 3. 3.6, 제8. 6. 6.2 6.2.1 가, 제8. 6. 6.2 6.2.1 라, 제8. 6. 6.2 6.2.1 바, 제8. 6. 6.2 6.2.1 사, 제8. 6. 6.6 6.6.4 6.6.4.3 가. 3) 가), 제8. 6. 6.6 6.6.4 6.6.4.3 가. 3) 다), 제8. 6. 6.6 6.6.4 6.6.4.3 가. 5) 가) (3), 제8. 7. 7.1 7.1.4 7.1.4.234, 제8. 7. 7.1 7.1.4 7.1.4.235, 제8. 7.3.2.10, 제8. 7.3.2.16, 제8. 8.3.58, 제8. 9. 9.3 9.3.2, 제8. 9. 9.4 9.4.2, 제8. 9. 9.5 9.5.2, 제8. 9. 9.5 9.5.4, 제8. 9. 9.17]

1)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이물 시험법 개정

2) 고령친화식품의 물성시험법(경도 및 점도) 신설

3) 식용유지류에 대한 지방산 시험법 중 중복된 방법을 정비하고, 시료의 전처리 방법 개선

4) 비타민 B2,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시험법 개정

5) 보존료 및 타르색소 시험법 적용범위 명확화

6) 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7) 식염의 페로시안화이온 시험법 중 이동상 명확화

8) 농산물 중 아사이노나피르 및 아피도피로펜에 대한 농약 시험법 신설

9) 축산물 중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 개정

10) 다이옥신 및 PCBs 시험법의 독성등가계수 및 표준물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개정 및 벤조피렌 시험법의 적용범위 및 전처리 카트리지의 사용가능 범위 확대

11) 칸나비디올(CBD) 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신설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65호(2020. 6. 29. ~ 2020. 7.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0. 7. 22.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 2020. 7. 23 ~ 7. 27.(서면)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9. 17.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9.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2729호(2020. 6. 18.)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하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6조제6항 및 부칙)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수입식품등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

나.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2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1)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 B/L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

2) "제품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

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제8조제3항 및 제4항)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 적용

2) 기준 또는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항목 등 개선

라. 해외 반송품 및 부적합 축산물의 정밀검사를 개선(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마. 검사시료 송부 위탁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 영업자로 개선(제9조제3항)

바.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최초 또는 기준 · 규격의 신설 · 강화 검사 시 식육의 검사 중 정보(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공개(제20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 6. 29.)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 7. 7.)

3) WTO 통보 : KOR690(2020. 7. 15. ~ 2020. 9. 13.)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분말 형태의 향료가 제조될 수 있도록 향료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범위를 식품 조리, 판매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정하며,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원자흡광광도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을 개선하고,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조화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1)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혼합제제로 분류되는 분말향료가 향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 확대 필요

2)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정의 개정(II. 4. 가.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3) 다양한 형태의 향료 제조 · 사용 가능하여 식품업계 어려움 해소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용대상 범위 확대 필요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식품 조리 · 판매용 기구등 및 식품등 소분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과산화초산제제, 구연산제제, 에탄올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요오드제제, 이산화염소제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제제, 젖산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차아염소산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 확보

다.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1)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기 및 표준품의 확대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II. 4. 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자몽종자추출물, 자일리톨, 제이인산마그네슘, 질소, 폴리감마글루탐산)

3) "수산화나트륨액"의 순도시험 중 용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화(II. 4. 가. 수산화나트륨액)

4)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중 나트륨 및 칼륨 시험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II. 4. 가.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L-카르니틴, 효모추출물)

5) "원자흡광광도법" 등 일반시험법 2종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을 시판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

위 확대(IV. 18., 19.)

6)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라.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1) 비타민D2의 영문명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

2)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경(II. 5. 가. 비타민D2)

3) 정확한 명칭 제공으로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5호, 2020. 7. 27. (2020. 7. 27. ~ 2020. 9. 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 7. 17.)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 10. 28.) : 원안의결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인정서의 단순변경 신청 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조정하기 위하여「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변경 가능 항목에 대한 문구 명확화 필요
2) 변경신청서 양식에만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고시 본문에 명시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일치(제5조, 별지 제14호~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인정사항 중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제5조)
4)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에 대한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제6조)
3)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반려 기준 정비로 심사 업무의 공신력 제고

라.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1)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 필요
2) 한시적 기준 · 규격 인정 대상인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 문구 삭제(제2조)
3)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통합으로 폐기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관련 조항 삭제(제3조)
4)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로 민원 이해 제고

마.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필요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제

3조, 별지 제1호~7호서식, 별표 1~6)

3)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관련 제출자료 신설(제3조, 별표 2)

4) 심사 제출자료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6호, 2020. 7. 27. (2020. 7. 27. ~ 2020. 9. 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 7. 3.)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 10. 28.) : 원안의결

소식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2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품목을 반영하고, 별표에 수출가능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입허용국가의 품목 추가 및 해당 품목의 범위 구체와 (별표)

–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함

– 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고 수입가능품목의 어종 또는 부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0-439호(2020. 10. 8. ~ 10. 28.)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제2020-4400호, 2020. 9. 15.)

소식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 · 규격을 개정하여 환자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 · 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안 제5.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1 2.2.1.10 가, 제8. 2. 2.2 2.2.1 2.2.1.11 가, 제8. 2. 2.2 2.2.1 2.2.1.12 가, 제8. 2. 2.2 2.2.2 2.2.2.5 다. 7) (2), 제8. 2. 2.2 2.2.2 2.2.2.17 가. 1), 제8. 2. 2.2 2.2.2 2.2.2.17 가. 2), 제8. 2. 2.2 2.2.2 2.2.2.17 가. 6) 가), 제8. 3. 3.2, 제8. 6. 6.5, 제8. 9. 9.1 9.1.2 가, 제8. 9. 9.5 9.5.4, 제8. 9.5 9.5.4 가, 제8. 10. 10.2 10.2.3 가. 2)]

1)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환자 대상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
2)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3)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을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4)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상식사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와 기준 · 규격 신설
5)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 · 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 구축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 규격 개정[안 제1. 2. 3), 종전의 제1. 3. 65), 종전의 제2. 2. 29), 종전의 제2. 3. 4) (1) 라, 제3. 1, 제3. 1. 1), 제3. 2]

1)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 · 규격 개선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사래가 잘 걸리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편의를 위해 점도 규격 신설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 · 규격 관리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0) 베나락실,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93) 오메토에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

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5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64호(2020. 6. 29. ~ 2020. 7.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9. 1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9.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0-2728호(2020. 6. 1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0. 10. 15 ~ 16,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제처와 협의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757회, 2020. 11. 13.)

소식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06호(2020. 9. 17. ~ 10. 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0-3553호, 2020. 8. 5.)

소식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1) 여러 가지 식용색소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준 신설 필요
2)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II. 2. 6))
3)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4) 식용색소 사용량의 합리적 관리로 국민 건강 확보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4호, 2020. 7. 27.(2020. 7. 27. ~ 2020. 9. 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 7. 17.) : 심사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 10. 28.) : 원안의결
4) 자체 규제심사('20. 11. 6.) : 원안의결
5)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 11. 10.) : 의견없음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 11. 20.) : 비중요 규제

소식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 ·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위해평가를 통하여 김치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커피추출농축액의 미생물 규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8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어유의 비소기준을 중금속 구성 특성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을 신설하고, 올리고당 시험법을 개선하고, 미생물시험 시 시험조작의 무균여부 확인을 위한 음성대조군 시험을 시험법 상에 명확히 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 · 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 · 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김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식초, 복합조미식품, 카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3) 통계적 개념의 확대 도입을 통해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나. 커피 중 미생물 규격 개정 [안 제5. 9. 9-2. 5) (4), 제5. 9. 9-2. 5) (5)]

1) 식품 제조 · 가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가공품도 최종제품과 동일한 규격이 적용되어 개선 필요
2) 최종 커피제품에서 미생물제어가 가능한 반가공 상태의 커피추출물은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 적용을 제외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다. 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④]

1) 어유의 중금속 구성 특성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중금속 기준 개정 필요
2) 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3)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어유의 수입?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위해도가 큰 무기비소 기준 관리로 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상동나무, 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 Idiot rockfish, Northern shrimp 등 8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학명수정(4품목), 사용부위 명확화(2품목), 명칭수정(7품목)하여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0) 다이쾃, (24) 디클로베닐,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210) 페나자퀸, (225) 사이프로디닐, (228) 아족시스트로빈,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304) 프로베나졸, (317) 하이멕사졸, (324) 비페나제이트,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430) 설폭사플로르,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9) 피플루뷰마이드, (500) 피디플루메토펜,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516) 펜피록사미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다이쾃 등 2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108) 톨트라주릴, (117) 설피린, (184) 메토밀, (192) 루바베그론]

1) 「약사법」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수입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톨트라주릴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5. 23. 23-2 5) (3), 제8. 4., 제8. 6.2.1, 제8. 7.1.4.236 ~ 237, 안 제8. 8.3.118]

1)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시험법 신설

2) 미생물시험 시 음성대조군 시험을 하도록 시험법 개정

3) 이소말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4) 즉석조리식품 중 멸균제품은 대장균 규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문구 명확화

5)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27호(2020. 9. 28. ~ 2020. 11. 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0. 12. 9. ~ 12. 15.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10. ~ 12. 14.

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0. 12. 16. ~ 12.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4455호(2020. 9. 21.)

소식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1)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함

2)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유아 · 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능성의 범위(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은 표시 · 광고가 가능함

2) 어린이, 임산 · 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함

다. 식품등의 요건(안 제5조)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 · 가공된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서 제조 · 가공되어야 함

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안 제6조)

1) 기능성 내용 및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2)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마. 자료 공개 등(안 제7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2019. 12. 31.~2020. 1. 21.)

2)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2019. 12. 30.)

소식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첨가물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며,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Ⅱ. 1. 자.)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 · 포장 재질' 추가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Ⅲ. 1. 자, 2,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80호, '20. 5. 8.)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